



제424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 하향 및
최고이자율 위반 시 상사법정이자(6%) 초과분 무효화 등〉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35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 하향(27.9%→20%)	2
2. 최고이자율 위반 시 상사법정이율(6%) 초과분 무효화	11
3. 최고이자율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0.
3. 회 부 일 : 2025.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며,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취이자를 제한하는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유인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5조 및 제19조).

Ⅲ. 검토의견

1.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 하향(27.9%→20%)

□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대부이자율의 법정 상한¹⁾을 27.9%에서 20%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u>100분의 27.9</u>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③ (생략) ④ . ⑤ (생략) ⑥ (생략)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 ----- ----- ----- <u>100분의 20</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u>100분의 27.9</u>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 ⑤ (생략)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 <u>100분의 20</u>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법상 최고 대부이자율은 법률에 정해진 상한(27.9%)의 범위에서 대통령령(20%)으로 정함.

□ 현행법 체계상 최고금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과 「이자제한법」이 있는데,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금리 및 제한사항을, 「이자제한법」은 사인간 거래에 대한 최고금리 및 제한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각각의 법률은 법률에서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두 법의 시행령 모두 현행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음.

[표 1]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비교

구분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법률	·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령	· 연 20%	· 연 20%

□ 최고금리 규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이자제한법」을 통해 최고금리 규제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으나, IMF 경제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²⁾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1998. 1. 13)된 후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대부업의 양성화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부 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 2002년에 제정되었음.

2) IMF는 이자율 상한제도가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금리정책을 권고

- 「대부업법」 제정 당시에는 대부업자의 등록을 확대하여 음성적인 대부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기조 하에 최고금리 수준을 종전 「이자제한법」 대비 높은 수준인 연 70% (시행령 66%)로 정하였으나, 이후 대부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최고금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21년 7월 이후 법정 이자율 상한은 연 20%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2007년 「대부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로 인한 폭리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배경에서 「이자제한법」이 다시 제정됨에 따라 사인 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이자율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음.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도 제정 당시 연 30%에서 점차 인하하여 2021년 7월 이후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연 20%를 유지하고 있음.

[표 2]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연혁

적용 기간		적용대상별 금리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사인간거래
1998. 1. 13. ~ 2002. 10. 26.	근거법 최고금리	-(‘98년 舊 이자제한법 폐지) -		
2002. 10. 27. ~ 2007. 6. 29.	근거법	-	대부업법 (법 제8조, 승 제5조)	(준용)
	최고금리	-	연 66%	연 66%
2007. 6. 30. ~ 2007. 10. 3.	근거법	-	대부업법 (법 제8조, 승 제5조)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	연 66%	연 30%
2007. 10. 4. ~ 2009. 4. 20.	근거법	-	대부업법 (법 제8조, 승 제5조)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	연 49%	연 30%
2009. 4. 21. ~ 2010. 7. 20.	근거법	대부업법 (법 제8조, 승 제5조)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연 49%		연 30%
2010. 7. 21. ~ 2011. 6. 26.	근거법	대부업법 (법 제8조, 승 제5조)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연 44%		연 30%
2011. 6. 27. ~ 2014. 4. 1.	근거법	대부업법 (법 제8조, 승 제5조)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연 39%		연 30%
2014. 4. 2 ~ 2015. 12. 31.	근거법	대부업법 (법 제8조, 승 제5조)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연 34.9%		연 25%
2016. 3. 3. ~ 2018. 2. 7.	근거법	대부업법 (법 제8조, 부칙 제5조*)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연 27.9%*		연 25%
2018. 2. 8. ~ 2021. 7. 6.	근거법	대부업법 (법 제8조, 승 제5조)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연 24%		연 24%
2021. 7. 7. ~ 현재	근거법	대부업법 (법 제8조, 승 제5조)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연 20%		연 20%

* 개정 「대부업법」이 공포한 날(2016. 3. 3.)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최고이자율 수준을 정해야 할 하위법령(시행령)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고 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령 개정 이전(2016. 3. 3. ~2017. 8. 28.)까지 최고이자율 27.9% 자동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 개정안은 대부계약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27.9%에서 20%로 하향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고금리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최고이자율 인하가 대부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자제한법」 심사 경과, 2025년 7월 22일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³⁾의 국회 논의 경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대부이자율의 상한을 하향시킬 경우 시장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금리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⁴⁾ 대부이자율 제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어 대부업의 생활금융 공급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현재 대부업 신용대출 원가⁵⁾가 22.2%~23.1% 수준으로 이미 역마진에 따른 대출규모 축소 및 영업중단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⁶⁾ 최고이자율 상한 하향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이 최고 대부이자율 인하 시 대부업체의 수익성 감소에 따라 연체리스크가 높은 차주에 대한 대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는 생

3)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공포

4) 다만 현행 법 시행령에서 이미 최고이자율을 20%로 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법정 최고이자율의 상한이 20%로 하향되더라도 즉각적인 최고이자율의 변동은 없음.

5) (2023년, 한국금융연구원) 조달원가 7.8%, 업무원가 3.1%, 자본원가 3.2%, 신용원가 8.0%~9.0%

6) 유사한 예로, 2021년 8월 이후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및 캐피탈의 경우 대출금리가 법정최고금리 제한으로 조달비용 상승에 비례하여 인상되지 못하게 되자 신규 신용대출 영업을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임형석,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KIF 연구보고서, 2024. 12. p.36).

계형 자금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 다만, 최고이자율 인하 시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 차주 중 대다수는 중금리대출·정책서민금융 등 제도권 내 대체시장으로 흡수될 수 있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차주의 비중은 제한적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는바⁷⁾⁸⁾⁹⁾,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효과와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 촉진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최고이자율 인하(27.9%→24%) 당시 24%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139.9만명) 중 약 74.3%(104만명)는 민간금융권의 20~24% 대출로 흡수되고, 약 7.1%(9.9만명)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18.7%(26.1만명)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축소되었는데, 이들 중 약 4~5만명(전체 차주 중 2.9%~3.6%)만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음(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2020. 11. 16. 참고)

8)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최고이자율 인하(24%→20%) 추진 당시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239만명) 중 약 87%(208만명)은 20% 이하 대출로 흡수되어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되고, 나머지 약 13%(31.6만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중 약 3.9만명(전체 차주 중 1.6%)만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음(위의 같은 보도자료 참고)

9) 저신용자 수의 전반적 감소, 중금리대·정책서민금융 등 대체시장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최고이자율 인하 후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일부만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연구결과(이수진·박준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KIF 연구보고서, 2024. 4.”)도 존재함.

[표 3]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및 대부업 대출잔액 추이

일자	최고이자율		대부업 대출 잔액 (조원)
	법률상 상한	시행령	
2017년말	27.9	27.9	16.5조
2018년 2월		24.0	16.5조
2018년말			17.3조
2019년말			15.9조
2020년말			14.5조
2021년 7월		20.0	14.5조
2021년말			14.6조
2022년말			15.9조
2023년말*			12.5조
2024년 상반기			12.2조

* 2023년말 아프로대부의 대부업 철수(저축은행 등 자산이전, 대출잔액 약 2조원) 등으로 대부잔액 감소
(자료: 금융위원회)

□ 다음으로, 현행 「이자제한법」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의 법정 상한이 25%인데¹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법정 상한은 이보다 같거나 높게 규정하는 것이 법률간 체계 정합성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물론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상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을 정할 수 있으나, 법률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는 「이자제한법」에서의 상한이 「대부업법」의 상한보다 낮게 설정하거나, 최소한 각 법률에서의 상한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10)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 만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등록 대부업체가 일반 민간채권자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대부업 등록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고금리를 수취하기 위해 일반 민간채권자로 위장하여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표 4]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혁 비교

구 분	'02.10월	'07.6월	'07.10월	'08.3월	'10.4월	'10.7월	'11.6월	'11.10월	'14.1월	'14.4월	'14.7월	'16.3월	'18.2월	'21.7월
대부업법	70%			60%	50%				40%			27.9%		
시행령	66%		49%			44%	39%			34.9%		27.9%	24%	20%
이자제한법	제정	40%						30%			25%			
시행령		30%									25%		24%	20%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¹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지난 2024년도 정기회 정무위원회에서의 「대부업법」 개정 논의 당시 고금리 등 경제상황을 고려한 이자율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관련 개정안¹²⁾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¹³⁾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서영교의원안(2201392): 25%→15% / 윤준병의원안(2202178): 25%→20%

12) - (서영교의원안, 의안번호 제2201391호) 이자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최고 이자율을 15%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 시 효력 제한 규정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 (윤준병의원안, 의안번호 제2202172호)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

13) 현 최고이자율이 이미 20%이므로 당장의 개정 실익이 없는 점, 향후 금융시장 변동 등에 따른 금리 조정 등 조치의 시행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의결함(제22대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

□ 금융위원회는 2024년 정기회 논의 당시와 동일한 입장으로, 최고이자를 상한 하향 시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인한 금리 급등 등 상황 발생시 금리 조정 등 필요조치가 더욱 어려워져 저신용·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등 오히려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개정 전후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0%로 동일하므로 개정에 따른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 등 실익 역시 부족해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최고이자율 위반 시 상사법정이율(6%) 초과분 무효화

□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¹⁴⁾이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대부계약 체결 시 「상법」상 상사법정이율(=6%¹⁵⁾)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상사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 충당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생략) ② · ③ (생략)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생략)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 ⑤ 제1항을 위반한 대부계약에 대해 채무자가-----「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 ----- ----- -----. ⑥ (현행과 같음)

14)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이자율의 산정 및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

「대부업법」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

□ 현행 법률, 2025년 7월 22일 시행예정 법률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5] 개정안 등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법률	시행예정 법률 (2025. 7. 22. 시행)	개정안
최고이자율 법정 상한		연 27.9% ※ 시행령: 연 20%		연 20%
최고이자율 위반 시 효력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	상사법정이율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		(이자율 무관) 이자계약 전체 무효 ※ 상사법정이율 이내 이자 수취도 제한	
최고이자율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¹⁶⁾ 으로 정하는 이자율 위반 시 효력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	(규정 없음)	대부계약 전체 무효 ※ 대부제공자의 원본 반환 및 이자 변제 청구권 제한	
벌칙	대부업자 ¹⁷⁾	최고이자율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고이자율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최고이자율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	이자 수취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자 수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이자 수취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5)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16)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무효화 사유인 초고금리 기준은 연 100%로 입법예고중(입법예고 기간: 2025. 4. 8.~2025. 5. 19.).

17)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최고이자율 위반 시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됨.

「대부업법」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과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고¹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하며, 원본 충당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임.

-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 이용 피해자의 연환산 평균금리는 535%인 것으로 나타남¹⁹⁾.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연간 대부업법 위반 관련 신고·상담 현황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표 6]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대부업법 위반 관련 신고·상담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등록대부	3,369	4,163	4,617	5,009	7,314
고금리	1,219	2,255	3,216	3,472	2,145
채권추심	580	869	1,109	1,985	2,947
불법광고	1,981	1,732	1,202	1,812	1,673
불법수수료	202	219	206	606	707
합계	7,351	9,238	10,350	12,884	14,786

(자료: 금융감독원)

18) 예를 들어, 연 50%로 이자계약을 한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이자는 인정하고, 초과분인 연 30%(연 50% - 연 20%)의 이자계약을 무효로 함.

19) 대부금융협회 보도자료, “불법사채 채무조정 146건(대출금 2억 3,604만원) 감면”, 2024. 2. 21.

○ 이에 국회는 2025년 1월 21일 「대부업법」 개정²⁰⁾을 통하여 ①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하여는 이자율 수준과 무관하게 이자에 관한 약정을 전부 무효화²¹⁾하고, ②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대부계약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 주체와 무관하게²²⁾ 대부제공자가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이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 유인을 감소시켜 불법사채시장의 형성과 확산을 억제하고,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과중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채무 악순환 구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위반 시 ‘상사법정이율(6%)’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화하려는 것으로, 시행예정법률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²³⁾

20) 2025. 7. 22. 시행예정

21)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과 달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 적용 제외를 명시함으로써 상사법정이율(연 6%) 범위 내에서의 이자 수취까지도 제한함.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채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채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2) 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불법사금융업자 모두에게 적용

23) 최고이자율이 연 20%인 상황에서 연 이자율 25%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시행예정법률) 20%(최고이자율)를 초과한 5%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
- (개정안)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한 19%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

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하여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부
여함으로써 대부업체의 불법적 수익 추구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
단하고, 불법적 대부계약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전한 서민금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
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
정²⁴⁾하고 있음. 다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개별 법령이 이러한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²⁵⁾임.

- 따라서, 사인 간의 불법행위를 무효로 규정할 경우 일부 무효
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 무효로 할 것인지의 규정 형식은 원
칙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보임.

24)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
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
로서 효력을 가진다.

25)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
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
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만, 개정안의 입법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대부제공자와 채무자가 계약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최고이자율을 소폭 초과²⁶⁾ 하더라도 이자 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그 불이익을 대부제공자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이는 부당이득 관련 민법상 일반원리²⁷⁾ 등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최고이자율을 다소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계약 효력을 무효화하고 법상 최고금리(20%)에 못미치는 상사법정이자율(6%)만 인정하는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원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 법무부 역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에서 허용한 이자약정(연 20%)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과도한 사적 자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²⁸⁾²⁹⁾.

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8)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최고이자율 위반 시 이자약정 전체 무효화 관련 「이자제한법」 심사), 2023. 11. 15.

29) 「대부업법」(서영교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윤후덕의원안) 관련 검토의견(2024. 9./2025. 4. 법무부 상사법무과)

□ 둘째, 채무자가 개정내용을 악용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이자·원금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를 편취하는 사기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대부제공자의 단순 과실만으로도 이자계약의 대부분(6% 초과분)이 무효화될 수 있어³⁰⁾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마지막으로, 지난 2024년도 정기국회 「대부업법」 개정 논의 당시 위 쟁점들을 고려하여 정무위원회에서는 등록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최고이자율(20%) 위반 시 위반 부분에 한하여 약정을 무효화하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성착취·폭행·협박·인신매매, 초고금리³¹⁾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한해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면 무효화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위 내용을 반영한 일부개정법률이 2025년 7월 22일 시행예정이므로, 개정법률의 집행 추이를 관찰하여 추후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30) 예) 20%의 이자율로 1년간 1천만원 대부계약 →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서 대부제공에 대한 사례로 상품권(5천원) 제공 → 이후, 등록대부업자를 상대로 ‘상품권까지 합하면 최고금리를 0.05%p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사법정이율(6%) 초과분(20-6=14%)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31)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과 같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상사법정이율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지속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불이익 부담의 형평성 및 부작용 우려, 상법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 2024년도 정기회 국회 심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최고이자율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

-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해당 최고이자율을 위반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u> 3. ~ 5. (생략) ③ ~ ⑤ (생략)	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벌칙)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u> 3. ~ 5.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불법사금융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개정되어 2025년 7월 22일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³²⁾에서 이미 해당 벌칙수준을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벌칙 강화는 개정법률에 대한 현장의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시행예정 법률에 따르면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은 무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인데³³⁾, 금융위원회는 단순 과실 등으로 잘못 부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최고이자율 위반행위를 불법사금융 목적이 명백한 무등록 대부업 또는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징역 10년)으로 처벌할 경우 형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8

3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공포

33)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14호, 2025. 7. 22. 시행 예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